

---

강원대학교병원 소방시설 연간자체점검 용역

# 과업지시서

---



2024. 01.

# 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 강원대학교병원 소방시설 연간자체점검 용역

2. 기간 : 착수일 ~ 2024년 12월 31일까지

## 3. 목적

강원대학교병원 내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『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2조 의한 화재안전기술기준,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·수행하여 관련 법규 충족 및 완벽한 소방·방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## 4. 과업관계법령

- 가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)
- 나. 동법 시행규칙 제20조(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)
- 다.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(점검사항·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)
- 라. 기타 소방관련법규
- 마. (계약예규) 용역계약 일반조건

## 5. 점검대상시설

가. 부지 :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

나. 대상물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본관동      | 39,168.61 m <sup>2</sup> |
| 2) 암노인센터    | 22,255.30 m <sup>2</sup> |
| 3) 어린이병원    | 14,322.47 m <sup>2</sup> |
| 4) 장례식장     | 2,092.37 m <sup>2</sup>  |
| 5) 철골주차장    | 7,484.87 m <sup>2</sup>  |
| 6) 사이트론 연구소 | 383.50 m <sup>2</sup>    |

## 6. 용역공급 및 계약범위

가.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 부지 내 대상물에 대한 법정점검(종합정밀점검),

작동기능점검) 2회를 용역범위로 한다.

- 나. 종합정밀점검은 연중 5월 이내 시행하고, 작동기능점검은 연중 11월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.
- 다. 위 점검 중 **간단한 회로 단선 및 소모품 교체 등은 이상 발견 시 즉각 조치**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며,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기타 관계법령에 부합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 완수시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 3부 작성 및 제출
- 마. 과업 완수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자체점검 기록표 6부 작성 및 제출
- 바. 이 과업지시서는 기획재정부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.

## 7. 점검자의 자격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(\*)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4]에 의한 자격(\*\*)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**종합정밀점검의 경우 보조인력의 기술인력은 위 [별표4]에서 지정한 등급보다 한단계이상 상위 등급**이어야 한다.

(\*)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

(\*\*)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참조

## 8. 점검자의 교체

점검자는 제7호에 의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- 가. 제7호의 기준미달
- 나.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, 과업지시서 위반
- 다. 그 외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부적합한 경우

## 9. 용역의 착수 및 보고

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점검자에 대한 자격,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.

-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
-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용역공정예정표 1부.
- 인력투입계획서 1부.
- 점검인력 자격 및 경력증명서류 1부.

- 비밀유지각서 1부,
- 기타 발주처 요청 서류

## 10. 인력 및 점검방법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또는 기구 일체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소방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『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점검 기술인력 및 점검소요 일수는 소방시설 점검 기술용역 시행방법은 『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』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 다만, 점검자의 자격은 과업지시서 제7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 위하여 관련 조합의 책임배상보험(공제)을 가입하여야 하며, 착수계 제출시 공제 가입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설비 보수상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임의로 관련자의 현장투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마. 소방시설 현장대리인(점검단위 주인력)은 점검 용역기간(용역 중지 기간은 제외)동안 본 점검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, 점검시험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소방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11. 지시감독

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한 소방시설 담당자(감독자)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지시감독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

## 12. 책 임

- 가.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위탁한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수급인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다. 수급인은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은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라. 수급인은 점검 진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사항은 용역이 완료된 후

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13. 안전관리

- 가. 수급인은 소방 시설점검을 실시하기 전 제8호에서 지정한 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업무 협의 완료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나. 수급인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기 전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원내 진료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작업(소음유발점검 등)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휴일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다. 수급인은 소방점검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물 점검 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.
- 라. 계약자는 점검 내용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조치하고, 본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인명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 져야 한다.
- 바. 소방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여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14. 점검결과 등의 보고 (완료계)

- 가. 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과업을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처에게(3부)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15. 금지사항

-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가. 원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
  - 나. 원내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  - 다.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제한구역에 출입 또는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
  - 라.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 - 마. 기타 우리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

### 16. 도급

본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을 할 수 없다.

## **17. 지체상금**

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거나,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**18. 문서 및 서류의 귀속**

- 가.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을 일체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원상 반환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서류의 일체를 발주처의 허가 없이 복사,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작성할 수 없다.

## **19. 계약의 해제 및 해지**

발주처는 다음 같은 각목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에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- 나.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다. 과업지시서 제11호에 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한 소방시설 담당자(감독자)의 정당한 지시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라. 과업지시서 제15호에 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마. 그 외 관계법령,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

## **20. 규정적용**

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정한 계약사무처리 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르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 일반관례에 따른다.